

2024

학교생활 · 인권규정

- 1장. 총칙
- 2장. 생활지도의 범위
- 3장. 생활지도의 방식
- 4장. 용의 규정
- 5장. 휴대전화 관련 규정
- 6장. 학생선도규정(학생생활교육위원회)
- 7장. 학생자치회 규정
- 8장.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업무 시행규칙
- 9장.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
- 부칙

장곡중학교 인권자치부





1. 학교생활 • 인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규정은 장곡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장곡중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 조【정의】

- ① “학생”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 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 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 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 라 한다)를 말한다.

제 5 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 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 6 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 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 7 조【조언】

- ① “조언” 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 · 상담 ·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8 조【상담】

- ① “상담” 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 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훈육】

- ① “훈육” 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대상: 수업방해 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 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교실 내 다른 좌석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수업 종료 시 까지 분리가 원칙이나, 문제 행동을 멈추었거나, 반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 나 선 상태에 서 교사의 지 시에 따라 수 |

| | | | | |
|---|--|--|---|---|
|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성 언행을 보일 시 담임교사의 지도 하에 조기 복귀 가능 | 업 참여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해당 수업 종료 시까지 분리가 원칙이나, 문제행동을 멈추었거나, 반성언행을 보일 시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조기 복귀 가능)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학년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 [*]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방과 후 20분内外) | 수업 지각은 타종 후 5분 경과 후를 기준으로 함. |
|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 방과후 지도가 필요할 경우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함 |
| 기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이 분담하여 지도한다. | | |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

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1 제9조 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차 : 주의 실시•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하교 시 : 수업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일 경우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음을 지도한 후 되돌려줌.• 같은 사항 2회 이상 발생 시 분리 보관 후 문제 생활 개선 의지가 보일 시 되돌려줌. (이 경우 교사에게 물품의 분실, 파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흥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p>※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p> |

| | | | |
|---|---|--|--|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같은 사항 2회 반복 발생 시 폐기 조치함 <p style="margin-top: 10px;">※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p>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 |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11 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7조에 따른 조언, 제8조에 따른 상담, 제9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0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 ·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12 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 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13 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3회 이상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학칙에 의거한 정당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이 아닐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5 조 【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16 조 (규정개정)

1. 아래와 같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 의거하여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에서 심의한다.
 - 1)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3)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 17 조 (인권교육 및 인성교육)

1. 학기당 1회 2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1)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이용하여 인권교육(존중과 배려 및 생활규범) 실시
 - 2)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인권교육과 교과 수업을 연계
2. 학기당 수시로 학생인성교육을 시행 하며, 인성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교사 협의회 및 전 달 연수를 연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 1)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이용하여 인성교육(수업철학공유 및 수업에 임하는 자세) 실시
 - 2)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인성교육과 교과 수업을 연계하며, 해당년도 인권교육 및 인성 교육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 18 조 (권리 및 자유)

1.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 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학생들은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단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된다.
3.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에게 의견을 전해서 대의원회를 통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또한 교무실 앞 게시판에 직접적으로 건의 사항 등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4. 학생들은 본인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정정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 19 조(학생의 참정권 보장)

- ①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교외 생활)

- ①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4장 용의규정

제 21 조 (교복)

1. 교복(상의 맨투맨티셔츠와 후드티셔츠, 후드집업, 하의 바지 및 체육복)과 사복 혼용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 선택에 따라 교복 또는 사복을 착용한다.

제 22 조 (실내화)

1. 실내와 실외를 구분할 수 있는 신발을 착용하여 실내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만드는

데 협조한다. 실내화 모양은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는다.
2. 안전을 위하여 슬리퍼 등하교를 금지한다.

제5장 휴대전화 관련 규정

제 23 조 (목적)

타인을 배려하는 생활의 습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러 실천사항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예절바르고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자 한다. 이에 맞춰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여 명랑하며 성실한 학교생활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4 조 (방침)

1. 본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등 가지고 등교할 수 있으나 교육활동 전에 학급별로 담임교사 책임 하에 수거하여 보관한 후 수업 또는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 시 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범교과적인 생활지도 차원에서 모든 교육활동시간에 본교 교사가 교육한다.
4.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가정과의 연계 하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가정에서 긴급 연락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전달하도록 한다.
 -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여 연락이 가능하게 조치한다.
 - 연락 후, 학생은 다시 휴대전화를 다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해당 학생의 조퇴·결과 처리가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 본인에게 돌려준다.

제 25 조 (사용 및 소지에 대한 관리)

| 위반되는 사례 | 위반 시 적용사항 |
|--------------------------|---|
| ○ 휴대폰 소지 시 (담임에게 미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당일 하교 시까지 적발한 교사가 휴대폰을 보관한다.○ 휴대전화 1회 적발 시, 적발한 교사가 직접 교육한다.○ 휴대전화 2회 적발 시, 학년협의회를 통해 학년생활지도체가 교육한다.○ 휴대전화 3회 이상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도를 받는다. |

* 휴대폰 사용 허용기간

가. 담당교사가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학부모가 요구하는 경우
(담임교사의 확인증을 받고 허용함)

다. 야외 활동 시(수학여행, 체험활동, 수련회 등)

라. 부모님과 면담이 꼭 필요하다고 학생안전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6장 학생선도규정

제 26 조 (명칭)

본 규정은 장곡중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칭한다.

제 27 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18조(학생의 징계)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에 <교육법 제77조(선도)와 중.고등학교 학칙 준칙 제27조(선도), 제 28조(선도 처분)에> 의거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8 조 (교육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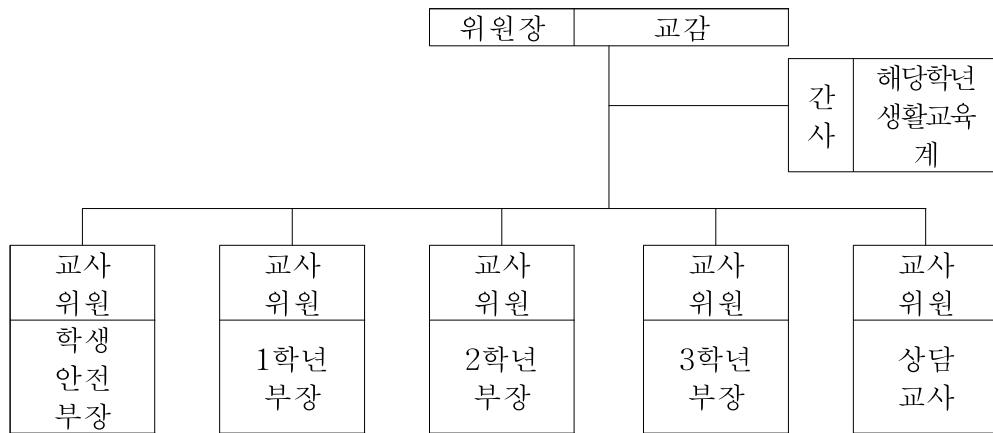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선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선도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3. 학생선도규정에 의거 처리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문제 행위에 대한 응보보다는 회복적 생활교육 및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5.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선도 대상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소지품 검사
 - 1)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가 진행 한다.
 - 3)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 4)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 생활안전부 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복적생활교육의 내용과 절차 】

1. 개별 및 당사자 상담(담임교사, 3~5회)
2. 성찰문 쓰기 및 보호자 전화상담
3. 학년 대화모임(담임교사, 학년생활교육계, 학년부장, 관련 당사자 및 필요시 상담교사)
4. 학교 대화모임(학부모 포함,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생안전부장, 교감(또는 교장), 관련 당사자, 필요시 상담교사)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 각 단계에서 필요한 인권 친화적 프로그램 병행
 - ※ 필요에 따라 단계 및 참석자를 유동적으로 운영
 - ※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이나 태도, 지필고사 부정행위, 수업거부 및 부정적 단체 행동 선도, 흡연, 음주, 도박, 절도, 음란물 배포 등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바로 개최하고, 인권친화적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

제 29 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의결)

1. 학생들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3. 본 위원회는 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를 서면으로 한다.



제 30 조 (기능)

본 위원회는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사안 발생 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제 31 조 (사안 설명)

1.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본 위원회는 대상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생활교육위원회의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32 조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호의 1의 선도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3 조 (교육 대상)

다음과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대상으로 할 수 있다.(표로 정리)

| 항 | 내용 | 생활교육 방향 및 단계 |
|----|--|---|
| 1 |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2 | 생활습관 및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3 | 불미스러운 글과 언행을 사용하는 학생 | |
| 4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쓰레기 무단 투기 및 껌이나 침을 뱉는 행위) | • 회복적 생활교육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한다. |
| 5 | 타인의 수업 또는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거치더라도 1회 만으로 인권친화적 프로그램 수준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 |
| 6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석, 무단외출을 한 학생 | |
| 7 | 교구, 교사에 낙서하거나 과실 혼란한 학생 | |
| 8 | 교사의 지시에 단순 불응하는 학생 | |
| 9 | 월담행위를 한 학생 | |
| 10 | 학교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변상조치) | |
| 11 | 기타 이상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 | |

제 34 조 (선도처리 학생 관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 처분의 의결 사항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선도의 종류에 의거 대상 학생을 선도한다. 또한 회복적 생활교육 계획서에 의거한 프로그램을 각 처벌 조항에 맞게 시행하여 학생들의 회복을 돋는다. 프로그램에 학생인권침해의 요소가 들어간 프로그램은 지양한다.(체벌 및 과도한 캠페인 활동) 단, 처분 전에 반드시 회복적 생활교육의 내용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봉사활동 계획과 시기는 학생안전부와 학년부의 협의를 거쳐 학생안전부서의 생활교육계에서 기안 및 결재를 한다.
- 2)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의 누적된 생활태도의 조속한 교정을 위하여 학교에 등교시켜 학교 봉사의 실천 및 과제 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하루 2시간 이내, 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 3) 출결과 이행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전문상담이 필요시에는 상담교사가 지원

한다.

2. 사회봉사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봉사활동 계획과 시기는 학생안전부와 학년부의 협의를 거쳐 학생안전부의 생활교육계에서 기안 및 결재를 한다.
- 2) 사회봉사는 태도상 문제가 누적된 학생, 문제의 심도가 약간 깊은 학생으로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로 및 과제 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하루 5시간 이내,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대상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조회와 종례를 받는다.)
- 3) 출결과 이행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전문상담이 필요시에는 상담교사가 지원 한다.
- 4) 사회봉사 기관의 선정은 학년부에서 학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학생안전부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문서일체를 취합 관리한다.
- 5) 사회봉사 후 봉사활동 확인서와 일지를 학생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정도의 누적도에 따라 학교 내 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3. 특별교육 이수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특별교육 장소와 시기는 학생안전부와 학년부의 협의를 거쳐 학생안전부의 생활교육계에서 기안 및 결재를 한다.
- 2) 특별교육 이수는 생활 태도상 문제가 장기화 및 습관화되었거나 또는 문제의 심도가 깊은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심하여 금연학교, 의료기관 및 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시키는 조치로서 출석으로 처리하며 총 30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 3) 특별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증을 학생안전부에 제출하고 이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4) 출결과 이행여부는 학생안전부에서 관리하고, 학생 관리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에서, 전문상담이 필요시에는 상담교사가 지원한다.
- 5) 정도의 누적도에 따라 학교 내 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특별교육 장소와 시기는 학생안전부와 학년부의 협의를 거쳐 학생안전부의 생활교육계에서 기안 및 결재를 한다.
- 2) 출석정지는 2회 이상의 특별교육을 이수했는데도 개선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학생으로 문제의 심도가 깊은 학생에 한하여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심하여 다른 학생과 간접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3) 출석정지 기간에는 반드시 전문상담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5) 각 항에 대한 최대한의 교육 조치는 아래 정리한 표에 따른다.(표로 정리, 2020.04)

| 구분 | 항 | 내용 | 학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 누적 행위 | 1 | 3회 이상 교육을 받았으나 개전이 없는 학생 | ○ | | | |
| | 2 | 동일 학년 학생활교육위원회에서 2회 이상 학교 봉사 지도를 받은 학생 | | ○ | | |
| | 3 |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사회봉사 지도를 받은 학생 | | | ○ | |
| | 4 |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특별교육을 받는 학생 | | | | ○ |
| | 5 | 인권친화적 프로그램 진행 기간 중 그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6 | 학교 내 봉사 교육 기간 중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7 | 사회 봉사 기간 중 사회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8 | 특별 교육 기간 중 특별 교육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 | | | ○ |
| 학생 생활 | 9 | 재학 중 음주 또는 흡연자 [*니코틴 함유 여부 관계없이 전자담배 소지 및 흡연자도 해당됨] | ○ 1회 | ○ 2회 | ○ 3회 | ○ 4회 |
| | 10 | 수업 중 학습 분위기를 고의로 흐리게 한 학생 | ○ | | | |
| | 11 |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를 선동한 학생 | | ○ | | |
| | 12 | 교사에게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학생(욕설, SNS 및 공개비방 등)-교권보호위원회를 함께 개최 가능 | | ○ | | |
| | 13 | 교사에 대하여 현저히 불손한 언행과 지시에 불응한 자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학생 | | | ○ | |
| | 14 | 단체 행동, 수업 거부 및 고사기피 선동자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생 | | | ○ | |
| | 15 |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한 학생 | ○ | | | |
| | 16 | 연속적인 미인정결석 학생 (산발적 미인정결석 합계는 5일, 15일, 20일) | ○ 4일↑ | ○ 8일↑ | ○ 15일↑ | ○ 15일↑ |
| | 17 | 무단가출 학생 | ○ 3일↑ | ○ 7일↑ | ○ 12일↑ | ○ 12일↑ |

| 구분 | 항 | 내용 | 학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 풍기 및 기타 | 18 | 외설물(음화, 음란 비디오, 음란 디스켓(컴퓨터), 불량 서적)을 소지한 학생 | ○ | | | |
| | 19 | 교내외에서 절도, 도박, 남·여 간의 성관계를 조장하거나 행한 학생 | ○ | | | |
| | 20 |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21 | 불법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학생 | ○ | | | |
| | 22 | 불법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홍보한 학생 | ○ | | | |
| | 23 | 사이버 머니나 아이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에 가담한 학생이나 남의 ID를 도용한 학생 | ○ | | | |
| | 24 | 경찰에 고소가 되거나 연행된 후 훈방을 받은 학생 | ○ | | | |
| | 25 | 재학 중 많은 문신을 한 학생 | | ○ | | |
| | 26 |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된 학생 | | ○ | | |
| | 27 |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를 제작·배포하거나 각종 개인 정보를 위조 및 도용한 학생 | | ○ | | |
| | 28 | 타인의 ID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거나 해킹을 했을 경우 | | ○ | | |
| | 29 | 불법 사이트 가입 및 특정 사이트에 극심한 운영에 불편을 주는 행위 | | ○ | | |
| | 30 | 형법상 유죄로 판결을 받은 자 또는 법에 저촉되어 지역 및 학교에 선도 위임된 학생 | | | ○ | |
| | 31 |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적으로 수회 파손한 학생 | | | ○ | |
| | 32 |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33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아르바이트(성매매 알선 및 가담)를 하거나 음란물을 유통한 학생 | | | ○ | |
| | 34 | 타인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각종 서버에 악의적인 해킹을 하여 큰 피해를 준 학생 | | | ○ | |
| | 35 | 바이러스 및 각종 악성코드, 프로그램의 유통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

제 35 조 (심의 및 확정)

-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각 학년생활교육계 및 학생안전부의 진상 조사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사나 학부모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 36 조 (학부모의 지도)

- 각 학년 생활교육계에서는 선도 대상 학생의 보호자에게 선도 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그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통고하여도 내교하지 않을 때에는 위임장 및 학부모의견서를 제출받아 교칙에 의거 처리한다.

제 37 조 (학급 담임의 지도)

- 선도대상 학생의 담임은 선도 기간 중에 회복적 생활교육에 적극 협조 한다.

제 38 조 (선도 학생의 고사 응시)

- 선도처리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단, 응시한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39 조 (봉사활동의 해석)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봉사활동은 일반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40 조 (선도처분의 경감)

- 학교장은 선도 기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벌의 경감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41 조 (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학교는 이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도록 한다.

제 42 조 (재심의 개최)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한다.

제 43 조 (재심의 후 절차)

-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재공고, 통보, 선도 시행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행정심판) 학생과 학부모가 재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행정소송) 학생과 학부모가 재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7장 학생자치회 규정

제 44 조 (목적)

1. 본 규정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5 조 (명칭)

1. 본 규정은 ‘장곡중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 46 조 (임원의 정의)

1. 본 규정에서 학생회의 위원이라 함은 장곡중학교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각반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을 말한다.

제 47 조 (학생회의 구성)

1. 학생회는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상설의결기구로서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각반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1) 회장 1명(선출당시 2학년 재학생)
 - 2) 부회장 2명(선출당시 1·2학년 재학생 중 각 1명씩)
 - 3)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장, 부회장
2. 학생자치회 회장은 학생회를 주관하고, 유고시 부회장이 이 회를 주관한다.
3.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은 각 학급에서 선출한다.
4. 학생회에서 운영상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가 인정될 때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8 조 (학생자치회의)

1.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2.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주 실시한다.
3. 정기운영위원회의 외에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회의의 의결은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1주일 전에 인권자치부장과 협의한다.
6. 특별소위원회는 제4항의 의결 과정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 49 조 (학생회의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및 발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
2. 각 상임위원장·부위원장의 임명 동의권
3.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수렴 및 전달
4.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5. 학생자치기구 공간 및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 정책결정 참여

제 50 조 (상임위원회의 조직 및 임무)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1. 각 상임위원회는 학생활동위원회, 체육위원회, 민주시민위원회, 축제준비위원회, 홍보위원회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각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2, 3학년 중에서 회장단의 면접을 통해 선출한다.
2. 위원장·부위원장은 학생자치회의 시 추천하여 확정하고 이를 회장단이 임명한다.
 - 1) 각부서의 조직구성과 역할을 다음과 같다.
 - (1) 학생활동위원회 : 여러 가지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
 - (2) 체육위원회 : 장곡 어울림 한마당 기획과 진행, 체육 관련 행사 기획
 - (3) 민주시민위원회 : 학생회 선거 업무, 공약 집행, 대토론회 등을 기획
 - (4) 축제준비위원회 : 마을학교 참석, 마을축제 기획과 진행 등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 (5) 홍보위원회 : 교내 각종 행사 등 홍보, 각종 캠페인 활동 기획 및 운영

제 51 조 (회장단 선출)

1. 후보자 추천 기준

- 1) 애교심이 강하고 협동·봉사정신과 자치의식이 뚜렷한 학생

2. 선출 방법

- 1) 선출방법은 선거관리 업무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2) 후보자 추천 : 학생 1인당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한다. 단, 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불가하다.
- 3) 후보자 확정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서를 인수하여 8조 1항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후 후보자를 확정시킨다.
- 4)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교 학생회 회원의 무기명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 5) 선출은 회장1명, 부회장2명(2학년 1명, 1학년 1명)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며,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학생은 학교선거관리위원 명의의 당선증을 수여한다.
- 6) 단독으로 입후보했을 경우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했을 경우 당선으로 인정한다.

3. 선출 시기 및 임기

- 1)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 2) 임기는 선출 후 차기 학년도의 1년간으로 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전 학년도에 인수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 52 조 (학급자치회 임원)

학급자치회(이하 ‘학급회’라 함)의 임원은 학급자치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코로나 19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학급이 두 반으로 분반되었을 경우 각 반에서 학급자치회장을 선출하여 학급자치회장 2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 53 조 (학급자치회 조직)

학급회 조직구성은 학생회와 같이 하거나 학급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 54 조 (학급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

1. 기준

- 1) 애교심이 강하고 협동·봉사정신과 자치의식이 뚜렷한 학생

2. 선출방법

- 1) 학생들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제11조 1항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를 선출한다.
- 2) 선출은 학급원 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3. 선출시기

- 1) 시기: 매 학기 초에 한다.
- 2) 임기: 임기는 학기를 기본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임명: 당선된 자를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4) 기타 임원의 선출은 학급원이 선출한다.

제 55 조 (기타사항)

각 조의 해석상 생기는 의문사항 및 기타 사안은 학생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8장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업무 시행규칙

제 56 조 (목적)

1. 본 규칙은 학생회장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 57 조 (명칭)

1. 본 규정은 ‘장곡중학교 학생회장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한다.(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

다)

제 58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자발적 참여의사를 지니고 신청한 재학생 중 10명内外로 선발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생회 임원 구성 절차에 의거 선출한다.

제 59 조 (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한 달 전까지 선거 일시를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 60 조 (선거인 명부)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후 2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각 반 명별표로 대신함)
2. 투표 당일 결석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제 61 조 (후보자)

1.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2.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3.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사퇴 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고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 즉시 후보자 명단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5. 후보자의 기호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제 62 조 (선거 운동)

1. 기간 :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2.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3. 선거 운동에 사용할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공약 등을 기재할 수 있다.
4. 벽보의 배열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에 따르며, 동일한 장소에 선거관리위원이 게시한다.
5. 연설회
 -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합동연설회를 실시한다.
 - 2) 연설 순서는 기호순으로 하고, 제한 시간은 각 후보마다 7분이내로 한다.
 - 3) 찬조 연설은 한 후보 당 1인에 한하며, 3분 이내로 할 수 있다.
6. 토론회
 -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토론회를 실시한다.
 - 2) 최초 토론 순서는 기호순으로 발언하고, 발언시간은 후보마다 동일하게 부여한다.
 - 3) 토론 시 발언권은 사회자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 63 조 (투표)

1. 투표는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2. 투표는 각 학급별로 담임교사 및 선거관리위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반별로 실시한다.
3.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일 1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4. 투표용지는 회장·부회장을 팀으로 하여 직접 기표할 수 있도록 인쇄한다.
5.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제 64 조 (개표)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이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하여 정확한 인원 및 매수를 확인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매수를 참관인 입회 하에 집계·검토한다.
3. 득표수 공표는 개표가 완료된 후 1일 이내에 게시판에 공고하고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표수, 기권표수로 공표하여야 한다.
4. 무효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 3) 어느 란에도 투표를 하지 않은 것
 - 4) 규정 란 이외에 투표를 한 것
 - 5) 두 개 이상의 란에 투표를 한 것
 - 6) 정해진 기표도구가 아닌 것으로 투표를 한 것

제 65 조 (등록 및 당선 취소)

1. 선거운동 중 금품수수나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당선 후에 1항 사안 발생이 드러났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당선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66 조 (재선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선인이 없을 때
 - 2) 선거에 전부 무표의 판단이 있을 때
 -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 4)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부정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 무효가 될 때
2. 재선거는 제 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선거일을 선거일 전 5일 이내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3. 재선거에 관한 제반 절차는 이전 선거 때와 동일하다.

제 67 조 (부칙)

본 시행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민주적 관례에 준하되, 그 유권 해석은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한다.

제9장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 68 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목적)

1. 경기도 조례 제4085호 제 5장 보칙에 의거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원·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반드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 69 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인권자치부장)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 70 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

1.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 71 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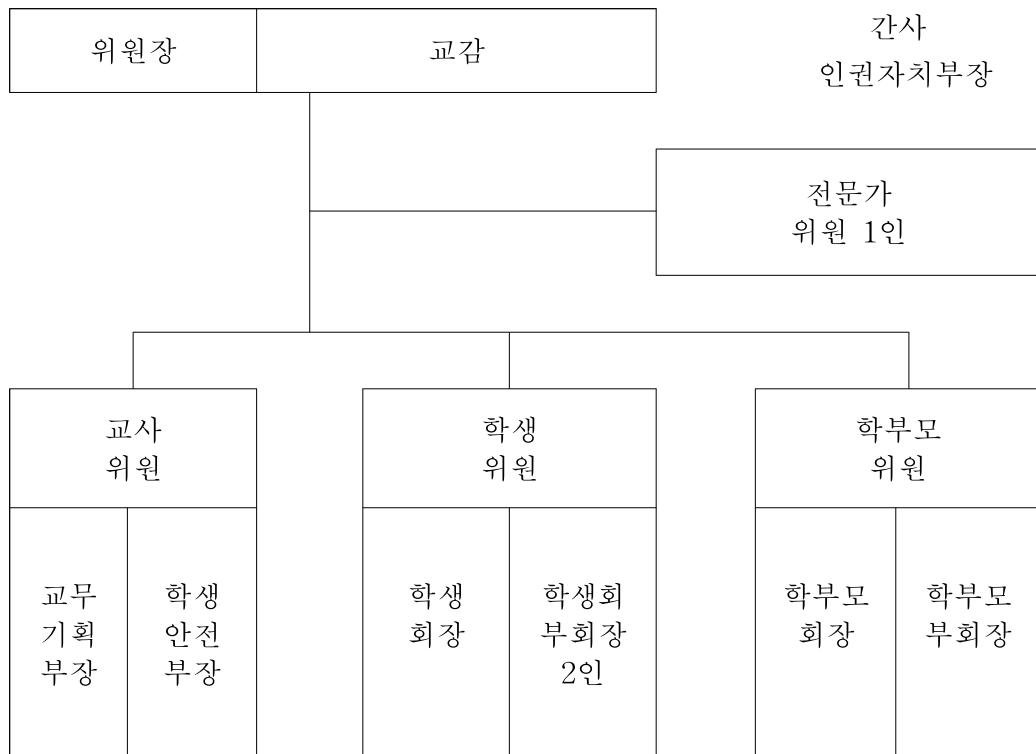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2.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 72 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선출시기 및 임기)

1. 위원의 선출은 매해 3월 중에 실시한다.
2.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후부터 차기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73 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1. 규정개정심의 위원은 아래와 같이 임명한다.



- 부 칙 -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3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